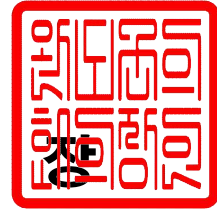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4월 1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2. 발 의 자 : 박 재 선 의원
3. 제정이유
 -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가정폭력·성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‘여성일상지킴이’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여성일상지킴이의 위촉 등(안 제5조)
- 활동(안 제6조)
- 지원(안 제7조)
- 지원 절차(안 제8조)
- 지도·감독(안 제9조)

5. 관련법령 :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6. 4. 1. ~ 2026. 4. 6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1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보장하고, 가정폭력,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'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여성일상지킴이"란 완도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2. "봉사활동"이란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순찰, 상담, 홍보, 캠페인 등 여성일상지킴이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된 활동 근거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적용하며,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여성일상지킴이의 위촉 등) ① 여성일상지킴이는 완도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로 구성한다.

②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제6조(활동) 여성일상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1. 야간 취약지역 순찰 및 위험 요소 점검
2.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
3. 가정폭력,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여성 발굴 및 관계 기관 연계
4.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안전 활동
5. 군수 또는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 안전 관련 봉사활동

제7조(지원) 군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일상지킴이 활동 운영비 및 사업비
2.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(순찰장비, 홍보물 등) 구입비
3. 여성일상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
4.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교육·훈련비

제8조(지원 절차)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.

③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「완도군 지방보조금

관리 조례에 따른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①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여성일상지킴이의 활동에 대해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)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「완도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